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이언구 의원외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2월 27일
- 회부일자 : 2008년 2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·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관광 사업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
-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성 증가로 충북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임.

4. 주요골자

- 충북관광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(안 제4조)
 -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한 경우
 - 관광 전세기를 취항시킨 경우
 - 기타 충청북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시 · 군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 마련 (안 제4조)
 - 관광객유치를 위해 시 · 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
- 재정지원의 종류 명시 (안 제5조)
 -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, 관광홍보물 등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
 -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(안 제7조)
 -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바
- 우리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
-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및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충북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